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안내

□ 핫라인 구축 및 교육부 상황반 운영

- 교내 선거법 위반 예방 및 학생 권리 보호를 위해 관련 사안 발생 시 핫라인을 활용하여 지역 선관위 및 교육부와 논의 및 공유 협조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교육부 상황반(22.19~6.1) 운영*

* 연락처/운영시간: 044-203-6644(08:00~14:00) / 044-203-6736(14:00~20:00)

□ 교육자료 안내 및 교육 지원

- 선거·정당 활동 관련 교육·홍보 자료* [참고 1, 2, 3 참조]

* 운용기준, 사례예시, 카드뉴스, 교원 연수영상, 학생 교육자료(영상, 책자 등) 등

* **범교과 학습 주제(민주시민교육)**로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이용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화상 강의, 동영상 강의** 등으로 대체 가능

** (학생 대상 영상) 강의영상 4종, 웹드라마 1종(20부작, 각 5~10분), 숏폼영상 15종, 영상 카드뉴스 6종 중앙선관위 유튜브 및 선거연수원 누리집 탑재 완료('22.5.) [참고2 참조]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교내 교원연수 및 학생교육: 선거일(2022. 6. 1.)전 실시 권장

- 찾아가는 선거 교육 신청 안내

찾아가는 선거교육 신청 개요

- (과정명) 새내기유권자 연수(고) / 민주주의 선거교실(초, 중)
- (신청기간) 2022.1.1.~11.30.(학습기간: 2022.2.1.~11.30.)
- (신청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www.civicedu.go.kr) - '민주시민교육' - '연수신청' - '새내기유권자 연수 / 민주주의선거교실'
- (주요내용) (새내기 유권자 연수)주권행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바람직한 선거·정치 참여의식/ (민주주의 선거교실)선관위 역할, 선거 관련 선택활동

□ 학교 규정 점검 및 정비

-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른 학칙 등 학교 규정 정비

- 정당 가입 정치참여 활동, 학교장 허락 없는 외부활동 등에 대한 금지 조항 및 관련 징계 조항 삭제

: 상위법령 및 권리 확장에 따른 변경 시, 학칙 제·개정 시 의견수렴 과정 생략 가능*

* 기 안내 공문(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4438(2022.3.21.)) 참고

□ **교내 선거운동 범위**

운용기준, 선관위 유권해석, 시도교육청 협의* 등에 따라 **‘학교에서의 질서유지와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학교 관리자(학교의 장)가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학생의 학교 내 선거운동을 일부 제한할 수 있음**

* 교육부-시도교육청 공동추진단 협의회('20.1.20., '20.2.6., '20.2.19., '22.2.11.)

-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의 원활한 운영 및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시설 안으로 외부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 관련 근거 —

- 「교육기본법」 제16조(학교 등의 설립자·경영자) ① 학교와 사회교육 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관리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3.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선거일 기준으로 선거권이 있는 학생 및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학생은 「공직선거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함**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학생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학교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할 수 있으나,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이용하거나 학교 운동장 등 옥외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호)

* 그 외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 관련 **학생이 할 수 있는 행위와 없는 행위**는 ‘학생 등의 선거운동·정당활동 관련 정치관계법 사례 안내(’22.2.)’ 참조

관련 근거

- 「피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 하향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중앙선거관리위원회, '22.1.25.)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학생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할 수 있으나, 교실 마이크나 학교방송 등 확성장치를 이용하거나 학교 운동장 등에서 이루어지는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호)

-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학교 내에서 선거운동은 학교에서의 질서유지와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함을 유의

* (예시) 학교에서의 질서유지와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선거운동이 일부 제한될 수 있는 경우

- ① 학생의 선거운동이 수업 진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경우
- ② 학생의 선거운동이 다른 학생의 휴식권, 안전권 등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의사에 반해 선거운동이 강요되는 경우
- ③ 학교 질서유지 등을 위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등

☞ 세부 기준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책연구, 현장의견 수렴,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여 별도 안내 예정

관련 근거

- 「피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 하향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중앙선거관리위원회, '22.1.25.)
- 학교에서의 질서유지와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 관리자인 학교의 장이 교육 관계 법령 또는 내부 지침 등에 따라 학교 내 선거운동을 위한 출입을 제한·통제하거나 학교 시설의 이용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바(2020.2.18.회신), 학교 내에서의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은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가능할 것임

□ 학교 안 정치관계법 적용 사례 및 관련 문의 방법

- 학교 안 선거운동 등 정치관계법 적용 대상이 되는 사례에 대해 다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참고할 수 있음
 - (운용기준) 학생유권자/피선거권자/정당원과 관련된 사례에서 정치관계법 적용 기본 원칙 등
 - (사례안내) 운용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질의답변 형식으로 구성

※ [참고] 자료명 및 주요내용

영역	배포시기	자료명
운용기준	'20.2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
	'22.2	피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 하향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
사례안내	'22.2	학생 등의 선거운동·정당활동 관련 정치관계법 사례 안내

- 그 외 「공직선거법」 적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또는 선거법규포털) 누리집* 및 상담센터**를 활용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선거법규포털(law.nec.go.kr)
 - ** 국번 없이 1390(유료) 또는 '시도교육청-시도선거관리위원회' 핫라인 활용
 - *** [정보공간] - [선거법규] - [서면/인터넷 질의보기]에서 기존 질의 확인 및 [참여마당] - [선관위 신문고] - [정치관계법 질의]를 통해 질의 가능

참고2

선거교육자료 목록

□ 선거교육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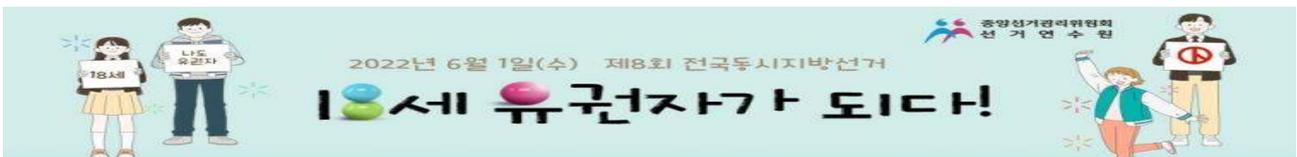
○ 선거에 참여하는 학생의 지도를 위해 다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 (중앙선관위) 한국선거방송 유튜브*에서 재생목록 [18세 유권자를 위한 선거정보, 어쩔선거 저쩔투표] 클릭

* <https://youtube.com/user/necpr>

- (선거연수원) 누리집에서(www.civicedu.go.kr) 배너* 클릭

* 배너 이미지



연번	구분	주요 내용	비고
1	P D F (3종)	선거교육 기본교재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 3종* * 청소년용, 교사용, 학교 밖 청소년용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공통 콘텐츠
2	E-BOOK (3종)	휴대폰, 인터넷 등으로 쉽게 확인하는 선거교육 기본교재(3종)	
3	오디오북 (1종)	음성 콘텐츠로 제공되는 선거교육 기본교재(청소년용)	
4	숏폼 영상 (15편)	편당 5분 내외로 구성되어 부담 없는 분야별 선거정보	
5	풀 영상 (3편)	편당 10분 내외로 구성된 알찬 선거교육 기본 영상	
6	강의 영상 (4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고등학생 선거교육 강의 영상	지방선거 맞춤형 콘텐츠
7	카드뉴스 (6편)	알쏭달쏭 선거정보를 퀴즈로 쉽게 알아보는 카드뉴스 영상	
8	리플릿 (1종)	선거운동, 투표시간, 투표절차 등 선거 핵심 정보를 정리	
9	후보자 정보 (정책·공약·마당)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정책·공약 확인 사이트	
10	메타버스 선거월드 (네이버 ZEP)	(사전)투표체험, 방탈출게임, OX 선거퀴즈, 투표용지 찾기 이벤트(상품권 제공) 등을 통해 지방선거를 재미있고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는 메타버스 선거체험 공간	5. 19.(목)부터 운영

참고3

지방선거 관련 카드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 카드 뉴스(11종)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자료이며, 사용 시 원본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선거 관련 카드뉴스(원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누리집 - [선거정보] - [정책·제도]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ec.go.kr/site/lvt/ex/bbs/List.do?cblidx=1507)

1. 지방선거의 모든 것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 6. 1. 실시

지방선거의 모든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일 및 임기

- **선거일** : 2022. 6. 1.(수)
- **선거운동기간** : 2022. 5. 19.(목) ~ 5. 31.(화) [13일간]
- **당선인 임기** : 4년(2022. 7. 1. ~ 2026. 6. 30.)

선거권과 피선거권

- **선거권** : 18세 이상의 국민
 - ※ 2004년 6월 2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선거권이 있음.
- **피선거권** : 18세 이상의 국민
 - ※ **거주요건**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2022. 4. 3. 이전부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의 종류 및 선출대상

선거종류(7개)	선출대상	
사·도지사선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세종), 특별자치도지사(제주)	
교육감선거	사·도의 교육감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자치구청장, 시장, 군수 (세종, 제주 제외)	
사·도의원 선거	비례	특별시의회의원, 광역시의회의원, 도의회의원,
	지역구	특별자치시의회의원(세종), 특별자치도의회의원(제주)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비례	자치구의회의원, 시의회의원, 군의회의원 (세종, 제주 제외)
	지역구	

※ 세종(4개)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의회의원(지역구, 비례), 교육감
제주(6개)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구, 비례), 교육감, 교육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 **등록기간** : 2022. 5. 12.(목) ~ 5. 13.(금)

선거명	선거구역	기탁금액	
사·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당해 사·도 관할구역	5,000만원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당해 자치구·시·군 관할구역	1,000만원	
사·도의원 선거	비례	당해 사·도	300만원
	지역구	선거구 단위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비례	당해 자치구·시·군	200만원
	지역구	선거구 단위	

※ <예비후보자 등록>
 * 사·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22. 2. 1.부터
 * 사·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 '22. 2. 18.부터
 * 구의원 및 장의 선거 : '22. 3. 20.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

선거일 투표

-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
- 투표일시 : 2022. 6. 1.(수) 오전 6시 ~ 오후 6시

사전투표

-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기간에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
- 투표기간 : 2022. 5. 27.(금) ~ 5. 28.(토)
-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정보는 여기서 확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nec.go.kr)**
▶ 선거에 관한 다양한 정보 제공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SNS**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 가독성 높은 선거정보 콘텐츠 및 동영상 제공
-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
▶ 정당·후보자 정책·공약 확인
-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
▶ 후보자 정보, 투·개표 결과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 한 눈으로 보는 지방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한 눈으로 보는 지방선거

- ① 1. 7개의 선거, 7장의 투표용지
- ② 2. 투표시간, 투표소 찾기
- ③ 3. 선거일 vs 사전투표 절차
- ④ 4. 기호와 정당명이 없는 교육감선거
- ⑤ 5. 후보자 기호에 '가, 나' 표시 이유

Q1 지방선거에서는 몇 개의 선거가 치러지나요?

총 7개의 선거가 실시되며, 7장의 투표용지가 교부됩니다.

- ①광역단체장(시·도지사)선거, ②교육감선거
- ③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선거, ④지역구광역의원선거, ⑤지역구기초의원선거, ⑥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 ⑦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가 실시됩니다.

* 단, 세종시는 4개, 제주도는 5개 선거가 치러짐

*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되는 지역(7곳) : 대구 수성구, 인천 계양구, 경기 성남시분당구, 강원 원주시, 충남 보령시서천군,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주 제주시

Q2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며 투표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선거일	사전투표일
· 6. 1 (수) 오전 6시 ~ 오후 6시	· 5. 27 (금) ~ 5. 28 (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	·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가능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내 투표소 찾기' 검색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 확인

※ 코로나19 확진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Q3 선거일 투표와 사전투표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사전투표
한 번에 투표!

선거일 투표
두 번에 나누어 투표!

사전투표

- ① 관내·관외선거인으로 나뉘고, 7장의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음
 - * 세종시 4장, 제주도 5장
 - *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음
- ② (관내 선거인) 투표용지에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 ③ (관외 선거인)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투표지를 모두 넣고 봉합하여 투표함에 투입

Q3 선거일 투표와 사전투표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선거일 투표 두 번에 나누어 투표!

- ① 1차로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 * 대상 선거: 교육감, 시·도지사, 구청장·시장·군수
 - *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음
- ② 2차로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 * 대상 선거: 지역구시·도의원, 지역구구·시·군의원, 비례대표시·도의원, 비례대표구·시·군의원
 - * 세종 4장(한 번에 투표), 제주 5장(두 번에 나누어 투표)

Q4 교육감선거 투표용지에 왜 정당명과 기호가 없나요?

교육감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정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호에 따라 특정 정당의 후보로 오해하여 선거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호 없이 후보자 이름을 순환배열*하는 방식(교호순번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해당 시도 안의 지역구기초의원 선거구별로 배열 순서가 달라지므로 투표하기 전에 후보자의 이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종·제주 지역구광역의원 선거구별로 배열

시도	지역구기초의원	지역구광역의원
충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Q5 지역구기초의원선거 후보자기호에는 왜 "가", "나" 표시가 있나요?

지역구기초의원선거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정당은 선거구별 선출 인원(2~4명) 내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 예를들면 2명을 선출하는 경우, 기호 1번 정당의 추천 후보자는 '가, 나'로 표시됩니다.

주의!

유권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해야 하며,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무효가 됩니다.

*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 11개 국회의원지역구내 지역구기초의원 선거구에서 3~5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합니다.

Q6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 "정책·공약마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olicy.nec.go.kr)

정책공약	대상	공개예정일
중앙 10대 정책	선거에 참여하는 중앙당	5. 9.
5대공약	시·도지사 및 교육감,	5. 19.
선거공약서	구·시·군의 장 후보자	입력시
선거공보	선거구내 모든 후보자	5. 24.

* 선거공보는 예세대에 5월 22일까지 발송됩니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하세요!

- 대상선거: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구·시·군의장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 선거
- 방송일정: 방송시간 및 방송사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 debates.go.kr

3. 쉽게 설명한 전국동시지방선거

쉽게 설명한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안내


투표일은 6월 1일 수요일입니다.


사전투표기간(먼저 투표하는 날)은 5월 27일(금)~ 5월 28일(토)입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학생증/청소년증 등)을 갖고 가야 합니다.

기표할 때 조심해야 할 것

반드시 기표용구로 찍어야 합니다.


✗ 연필이나 펜으로 표시하면 안 됩니다.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를 여러 칸에 찍으면 안 됩니다.


✗ 기표용구를 여러 칸에 찍으면 안 됩니다.

기표용구를 네모칸 안에 찍어야 합니다.


✗ 기표용구를 네모칸 밖에 찍으면 안 됩니다.

투표소에서 조심해야 할 것


✗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 몇 번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순서 안내

투표순서



1 본인 확인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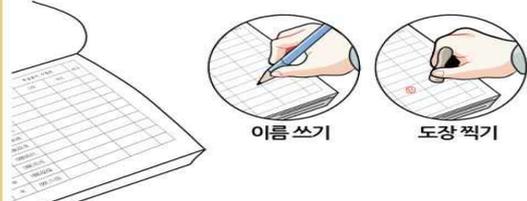
신분증을 보여줍니다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학생증/청소년증 등

2 서명하기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이름 쓰기 도장 찍기

3 투표용지 받기

투표용지 3장을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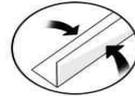
세종시: 4장 / 제주도: 2장 / 재·보궐지역: 4장

4 기표하기

투표용지 3장에 기표도장을 찍고 반으로 접습니다.



기표용구로 한 번만 찍습니다.



기표후 투표지를 반으로 접습니다.

5 투표지 넣기

투표지 3장을 투표함에 넣습니다



6 투표용지 받기

다시 투표용지 4장을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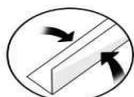
세종시: 없음 / 제주도: 3장

7 기표하기

투표용지 4장에 기표도장을 찍고 반으로 접습니다.



기표용구로 한 번만 찍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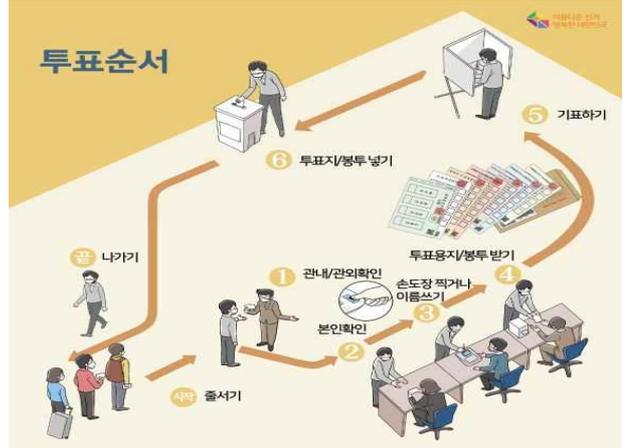
기표후 투표지를 반으로 접습니다.

8 투표지 넣기

투표지 4장을 투표함에 넣습니다



5.27~5.28 사전투표 순서 안내



1 본인 확인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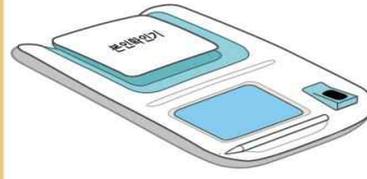
신분증을 보여줍니다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학생증/청소년증 등

2 서명하기

손도장을 찍거나 이름을 씁니다



3 투표용지 받기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다른 동네에서 투표할 경우

다른 동네에서 투표할 경우 봉투를 함께 받습니다.

4 기표하기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를 찍고 반으로 접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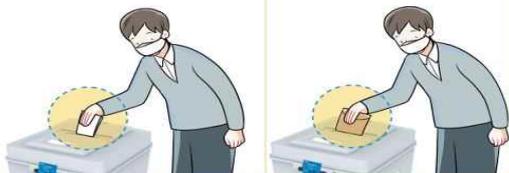


다른 동네에서 투표할 경우



5 투표지/봉투 넣기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습니다



다른 동네에서 투표할 경우

봉투를 넣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4. 유권자의 주요 선거 운동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요!

**만 18세 미만인 사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통·리·반의장 등**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만 18세 이상이어야 함.
*기타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언제든지 가능한 선거운동-

<p>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정보 전송 <small>(음성, 화상, 동영상 포함)</small></p> <p>✓유의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외에는 자동 돌보음신의 방법으로 전송금지</p>	<p>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선거운동 정보 게시 <small>(카페, 블로그 등 포함)</small></p> <p>✓유의 · 후보자 외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금지</p>	<p>전자우편 이용 선거운동 정보 전송 <small>(SNS 포함)</small></p> <p>✓유의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외에는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 전송 금지</p>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선거일을 제외하고 가능한 선거운동-

<p>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p> <p>✓유의 · 환성장치 사용 금지 · 선거운동 목적으로 집회개최 금지 · 목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선거운동 하는 행위 금지</p>	<p>전화로 하는 선거운동</p> <p>✓유의 ·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 가능(컴퓨터 이용 자동 돌보음신지 제외) · 오전6시부터 오후11시까지 가능</p>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궁금해요 선거운동! Q&A

인터넷 홈페이지

Q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A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 카카오톡

Q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후보자 등을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워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

A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Q 후보자 등으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워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요?

A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궁금해요 선거운동! Q&A

Q 일반 유권자가 특정 후보자 등의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나요?

A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Q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을 전송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A '선거운동정보'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후보자 등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후보자 등 : 예비후보자, 후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정보 Q&A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Q&A

Q2 지역구 기초의원선거 투표용지의 후보자 기호에는 왜 “가”, “나” 표시가 있나요?

지역구 기초의원선거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정당은 선거구별 선출 인원(2~4명) 내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 예를들면 2명을 선출하는 경우, 기호 1번 정당의 추천 후보자는 '가', '나'로 표시됩니다.

주의할 점은 **유권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해야 하며,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무효가 됩니다.**

*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 11개 국회의원지역구내 지역구기초의원 선거구에서 3~5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Q&A

Q3 교육감선거 투표용지에 왜 정당명과 기호가 없나요?

교육감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하거나, **정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어** 투표용지에 **정당명이 없습니다.**

또한, **기호에 따라 특정 정당의 후보로 오해하여 선거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호 없이** 후보자 이름을 **순환배열*하는 방식(교호순번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해당 시·도 안의 지역구기초의원선거구별로 배열 순서가 달라지며, 세종·제주는 지역구광역의원선거구별로 배열합니다. 그러므로, 투표 전에 후보자의 이름과 정적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Q&A

Q4 이사한 후,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사를 할 경우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5월 10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에 선거권자가 해당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선거인이 이종으로 투표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로,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은 5. 10. ~ 5. 14. 일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Q&A

Q5 재외국민은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나요?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해 올라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선거에서는 재외투표 절차가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Q&A

Q6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선거권이 있나요?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5. 10.) 현재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정보 Q&A 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Q&A

Q1 선거일 투표와 사전투표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선거일 투표
두 번에 나누어 투표!

사전투표
한 번에 투표!

[사전투표]

- 관내·관외선거인으로 나뉘고, **7장의 투표용지를 한 번에 수령**
* 세종 4장, 제주 5장
*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습니다.
- (관내 선거인) 투표용지에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 (관외 선거인)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투표지를 모두 넣고** 불합하여 투표함에 투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Q&A

Q2 사전투표를 할 때 관내·관외선거인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선거인이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면 관내 선거인,
그 외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면 관외 선거인으로 구분됩니다.

* 관외선거인의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봉투는 등기우편으로 선거인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로 배송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Q&A

Q3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며, 투표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선거일 및 사전투표 기간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코로나19 확진 유관자의 투표시간은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선거일 투표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네이버, 카카오)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에 접속하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 사전투표소도 위 사이트 검색을 통해 전국의 사전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Q&A

Q4 투표할 때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가 해당됩니다.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된 학생증, 국가공인 자격증 -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 (패지 이미지 불가) - (군인)병적기록부, 복무기록카드, 생활기록부, 병영생활지도기록부
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단체 발급 자격증 - 사진이 부착되지 않은 학생증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Q&A

Q5 선거인이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기표소 안에 들어갈 수 있나요?

초등학생인 어린이는 투표소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기표소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투표소 등 출입 가능여부>

구분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이상
투표소	○	○	×
기표소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Q&A

Q6 투표 후에 기표소 내에서 기법으로 투표지를 촬영해도 되나요?

기표소 내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투표소 내에서 개인의 인종·성별 등 촬영은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됩니다.

* 투표소 밖에서는 엄지척 브이 등 다양한 손짓을 활용한 인종·성별 촬영이 가능하고 SNS 게시도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 쉬운 선거용어(지방자치제도)

알아두면 쓸모있는 쉬운 선거용어

이야기로 보는 지방자치제도 편

전국을 일정한 지역 단위로 나누고 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여 주민을 위한 자치를 합니다.

*광역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기초단체 : 시/군/자치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조직은 지역의 살림살이를 맡아 하는 **단체의 장**과 지역주민 대신 주민의 뜻을 전하고 지방행정기관을 감독하는 **지방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지역발전

단체의 장 ↔ 견제 ↔ 지방의회

단체의 장 ↔ 균형 ↔ 지방의회

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는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지역 주민을 위해 지역을 발전시키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민은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직접 선출하고, 올바른 지방자치가 되도록 감시와 통제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자치구청장, 시장 및 군수를 뽑는 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특별시의회의원, 광역시의회의원, 도의회의원, 자치구의회의원을 뽑는 선거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일기로 선출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 알쏭달쏭 선거구제

알쏭달쏭 선거구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란?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선거를 실시하는 단위지역을 구분한 것

-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선거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그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 기준에 따라 구역을 분할하여 확정함

선거구제는 왜 중요할까?

1. 선거구의 크기에 따라 대표자 수 결정
2. 선거구제 선택이 각 정당과 의석 수에 영향
3. 선거구 확정에 따라 유권자 한 표의 가치가 달라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제 대원칙

한 표의 가치를 얼마나 동등하게 유지하는가?

유권자 100 선출 후보자 1 한 표 가치 1/100	유권자 1000 선출 후보자 1 한 표 가치 1/1000
-------------------------------------	---------------------------------------

따라서 선거구를 확정할 때 인구수 균형을 바탕으로 투표가치의 평등을 위해 선거인 수와 당선자 정수 비율이 균등한지 등을 고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제 유형

하나의 선거구에서 몇 명을 뽑을까?

소선거구제 | 1명을 선출
- 유권자가 후보자 중 1명에겐만 투표

중선거구제 | 2-5명을 선출
- 유권자가 후보자 중 1명에겐만 투표

대선거구제 | 2명에서 많게는 10명 선출
- 유권자가 선출 정수 만큼 투표하거나, 선출 정수의 일부만 투표하거나, 1명에겐만 투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 선거인사이드(투개표참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참관인 어떤 역할을 하나요?

참여공정화합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와 개표관리를 위한 제도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투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 및 개표 절차를 위해
참관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시행되고 있는데요.
함께 알아보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참관인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 (사전투표소 참관인 포함)

개표참관인

개표소에서 개표상황을 참관

어떻게 선정될까요?

정당·후보자가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 선정
단, 개표참관인은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외에 추가 선정제도가 있음
(구·시·군선관위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추천으로 선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를 위해! 투표참관인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 ✓ 투표개시 전 투표함 및 기표소 안팎의 이상유무 검사 참관
- ✓ 투표관리관과 함께 투표개시 전 투표함 봉쇄·봉인과정, 투표종료 후 투표함 투입구 봉쇄·봉인과정 참여 및 특수봉인지에 서명
- ✓ 선거인 등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과정, 투표용지 교부 및 진행상황 참관
- ✓ 투표간섭·부정투표 그 밖에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의 시정요구
- ✓ 투표함의 개표소 이송과정 참관

※ 다만, 투표참관인은 투표소 내 질서유지에 협력하여야 하고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정하고 투명한 개표를 위해! 개표참관인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투표소에서 송부된 투표함 인계·인수 절차 및 우표투표함과 관·내사전투표함의 이송절차 참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 순회 감시 또는 촬영 가능

구·시·군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에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개표상황을 정당·후보자에게 통보 가능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 요구

※ 다만,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내 질서유지에 협력하여야 하고, 개표사무를 방해 및 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 투표 인증샷, 어디까지 가능할까?

투표인증샷 어디까지 가능할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인증샷 유의사항

촬영이 가능한 인증샷

- 투표소 밖에서 촬영한 사진
- 엄지척, 브이 등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 사진을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

*인터넷·SNS·문자로 게시·전송 가능

이런 인증샷은 안돼요!

-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내에서 인증샷 금지
- ⊗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 및 투표지 촬영 금지

*기표소 내에서 사전투표지 및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1.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모두 선거법 위반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모두 선거법 위반입니다!

숙달 숙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정한 후보자 검증을 위해

주의해 주세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허위사실공표와 비방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허위사실공표 금지

-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지매(이하 '후보자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한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비방 금지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들을 비방**하는 행위

※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 선거운동물 위하여 후보자들과 관련하여 특정지역, 지역인, 성별을 비하 모욕하는 행위도 금지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사례

- 실제로는 초등학교 졸업임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에 '△△고등학교, △△대학교입학'이라고 공표한 행위
- 실제로는 △△후보 딸이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NS 하단 댓글에 '△△딸 이중국적, 부인이 원정출산의혹' 등으로 게시한 경우
- 실제로는 상대후보자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수수하였음이 분명하다고 발언한 경우

공정하고 깨끗한 아름다운 선거문화, 함께 만들어주세요!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비방과 관련하여 궁금하다면?

국번없이 1390

중앙선거관리위원회